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 5. 19.	규칙	제1206호
일부개정	2008. 1. 25.	규칙	제1230호
일부개정	2011. 6. 15.	규칙	제1300호
일부개정	2014. 6. 12.	규칙	제1391호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6. 10.	규칙	제1531호
일부개정	2020. 11. 25.	규칙	제158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3. 21.	규칙	제16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2024. 3. 21.>

1. “기관·단체”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2. “유망창업기업”이란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이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6. 12.]

제3조(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유망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1.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
2.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3. 최근 3년간 매출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4. 창업초기자금 확보를 위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5.>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1. 유망창업기업의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2. 유망창업기업 지원 사업 발굴 및 수행·관리
3. 그 밖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1. 25.]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유망창업기업에게 별표 1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4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0. 11. 25.>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우수기업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우수기업에게는 별표 2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에게는 별표 3의 우수기업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④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5조(우수기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6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7조(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8조(공유재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위한 계약서에 이전시기 및 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9조(자금지원)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 삭제 <2019. 6.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업무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2.>

제14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관련사항 및 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2024. 3.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5.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5. 규칙 제1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12. 규칙 제1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2019. 6. 10. 규칙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20. 11. 25. 규칙 제1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1. 규칙 제1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3. 21.>

유망창업기업 인증서(제3조의2 관련)

제 호

유망창업기업 인증서

기 업 명:

대 표 자:

유효기간:

귀사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별표 2] <중전 별표 1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1. 25.>

우수기업 인증서(제4조 관련)

제 호

우수기업 인증서

기업명:
대표자:
유효기간:

귀사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인

Number _____

Date: month day, year

Certificate of Corporate Excellence

Company name:
Representative:
Valid unti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any above was selected as an outstanding comp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Municipal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Corporate Activities and Support for Attracting Companies.

Mayor of Anyang

[별표 3] <개정 2024. 3. 21.>

우수기업인 증명서(제4조 관련)

《 앞 면 》

6cm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 량 번 호 : 유 효 기 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
	9cm

《 뒷 면 》

6cm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9cm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삭제<2024. 3. 21.>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25.>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일	선정기간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와 관련) <중전 별지에서 이동 2020. 11. 25.>

우 수 기 업 관 리 대 장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일	선정기간	비고